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7
----------	-----

2011년 6월 30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1년 6월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는 하수도사용조례 관련조항과,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하수도법」에서는 배수설비 설치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18조 제1항 3호는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토록 되어있어 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 현행조례 제34조 제1항 9호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감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4조)
- 또한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6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본 안건은 2010.6.10일 시장이 제출하여 2010.6.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일몰 규정으로 2007.10월부터 시행되었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한이 2010.12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기타 동 조례 시행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

가. 하수도법 위입범위 침해 조항 삭제(안 제18조)

- 「하수도법」 제30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제6호에 의하면 배수설비 설치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는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법의 위입범위를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동 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상위법과 다르게 운용될 경우 민원이나 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 삭제는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나. 기한 만료된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 삭제(안 제34조)

- 서울시가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2007.10월부터 2010.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내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20%를 감면해 주던 조례 제34조제9호 규정이 기한만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 시행 초기에 감면으로 인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손실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8년 이후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되면서 연간 23억원 내외의 세입손실을 가져왔던 점에서 동 규정의 기한만료는 현재 적자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붙임 1] 참조)
- 다만, 당초 하수도사용료 감면 목적이 관광호텔의 객실료 인하(특급 20%이상, 특급 외 10%이상)를 유도하여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었던 만큼 3년간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분석을 통해 감면 대비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 보전을 전제로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인용법 명칭 변경(안 제36조)

- 안 제36조는 2011.1.1일 부로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법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붙임] 1. 관광호텔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황

2. 「하수도법」 관련 규정
3.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4. 「하수도사용조례」 관련 규정

[붙임 1] 관광호텔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황

- 대 상 :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 233개소
(관광호텔 117, 인증업소 116개소, '10년 기준)
- 감 면 률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해 경감
 - 특 1·2급 호텔 : 객실요금의 20% 인하 시
 - 특급 외 호텔 : 객실요금의 10% 인하 시
- ※ 관광호텔의 경우 위 조건 충족 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외에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음
- 감면기간 : 2007.10 ~ 2010.12
- 총감면액 : 7,359백만원

구 분	업소수	감면건수(건)	감면금액(백만원)
계		6,247	7,359
2010년	233	2,142	2,396
2009년	212	2,005	2,229
2008년	215	1,819	2,272
2007년	145	281	462

※ 일반회계 보전 : '08회계년도에 2,034백만원 전입 후 보전 중단

- 감면 보전중단으로 인한 결손액
: 총 5,325백만원 (감면총액 7,359백만원 - 보전액 2,034백만원)

[붙임 2] 「하수도법」 관련 규정

하 수 도 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4.5>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붙임 3]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하 수 도 법 시 행 규 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붙임 4] 「하수도사용조례」 관련 규정

하 수 도 사 용 조 례

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4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73조에서 정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제2호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36조의 조 제목 “「지방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을 “「지방세기본법」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u>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u></p> <p>② <u>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73조에서 정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u>제1항제2호의</u>----- ----- ----- ----- ----- ----- -----.</p>
<p>제34조(감면) ① (생략)</p> <p>1. ~ 8. (생략)</p> <p>9. <u>다음 각 목의 호텔 및 숙박업소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u></p> <p>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 및 특2등급으로 결정된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료</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

호의 호텔 중 가목 이외의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

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1

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된 숙박

업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으로서 시

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

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

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

여 감면

② ~ ⑤ (생략)

제36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

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

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9.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

----- 「지방

세기본법」의 -----.